

의정활동보고서

제174회 정례회 (2002. 11. 20 ~ 12. 18)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의근 도지사님과 도승회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마무리 하고 내년 도정을 설계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제174회 정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해동안 우리는 민의의 전당인 이 곳과 도민의 애환이 담겨있는
생활현장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 왔습
니다.

그동안 미흡한 자치환경 속에서도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여러가지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300만 도민을 위하여 불철
주야 묵묵히 소임을 다해 오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중앙 정치계에서는 창당 붐이 일어나고 있고,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인들의 이합집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우리 도의원은 일선 정치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가 국민적인 축제의 장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얼마전 국회에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의결된 법안을 의결정족수 미달 시비로 재의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 국회에서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개선하는 전기가 될 것이며, 동료의원 여러분과 지방의회 운영에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 마늘파동을 비롯하여 동해안 적조현상과 사상 유래없는 폭우로 수해를 겪으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굳은 의지로 어려움을 극복한 한해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무사히 치루었고, 월드컵 4강신화를 이룩하였으며,

최근 제주도에서 개최된 전국체전에서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도가 전국 6위라는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 가능성으로 국제 원유가가 불안한 장세를 보이고 있고, 북한의 핵개발 문제로 중유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남북한 관계의 냉각이 우려되고 있으며,

한·칠레간 자유무역 협정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방차원에서도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는 금년도 의정활동을 결산하고 내년도 도정을 계획하는 정례회입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심사 등 중요한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회 고유기능의 하나인 행정사무 감사는 지적위주의 감사에서 비전을 제시하는 감사로 전환되어야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는 도정의 살림살이를 설계하는 자리로서 도민들의
여망에 부응하고,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시어 건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 께서는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조하고 추운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내실있는 정례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 11. 20

경상북도의회의장 崔 圓 炳

차 례

I . 개 황	
II . 의사 일정	
1. 소 집	
2. 회 기	
3. 활 동	
가. 본회의	
나. 위원회	
III . 의안 처리	
1. 본회의	
2. 위원회	
IV . 민원처리	
1. 청 원	
2. 진 정	
가. 접 수	
나. 처 리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2. 조례공포사항

3. 위원회활동사항

4. 기타사항

VI. 도정질문

부 록

☐ 조례안

☐ 예산안

☐ 동의안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174회 정례회는 2002년 11월 20일 개최하여 12월 18일까지 29일간의 회기 동안 4차의 본회의와 연22차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기중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11월 20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74회 회기결정의건, 2003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2003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경상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휴회의건 등을 의결하고 휴회하였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기중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2003년도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조례안 및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였다.

12월2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경상북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12월16일 14시에 본회의를 개의해서 2003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2003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의 17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였으며, 12월 18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경북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10건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처리한 후 제174회 정례회를 폐회하였다.

Ⅱ. 의사 일정

1. 소 집

가. 집회 구분 : 정례회

나. 소집 근거 : 지방자치법 제38조

다. 집회공고일 : 2002. 11. 7

라. 집 회 일 : 2002. 11. 20(수) 11:00

2. 회 기

가. 회의 기간 : 2002. 11. 20 ~ 12.18(29일간)

나. 개의 횟수

○ 본회의 : 4 회(누계 16회)

○ 위원회

구분	계	의회 운영	기 획	행정 사회	교육 환경	농수산	산업 관광	건설 소방	예결 특위
금회	22	1	3	4	3	2	2	2	5
누계	79	8	9	11	10	10	10	9	12

※ 누계는 제7대 의회 누계

3. 활 동

가. 본회의

개회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002.11.20(수) 11:00	1. 제174회경상북도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견 2. 2003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 세출예산안제안설명 3. 2003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예산안제안설명 4. 경상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견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견 6. 휴회의견	제 1 차 원안가결
12. 2(월) 11:00	1. 도정에 관한 질문 권준택 의원(칠곡군, 교육환경위원) 강영서 의원(봉화군, 농수산위원) 황상조 의원(경산시, 건설소방위원) 박성만 의원(영주시, 기획위원)	제 2 차
12.16(월) 14:00	1. 2003년도경상북도지방채발행동의안 2. 2003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3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3년도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	제 3 차 원안가결 수정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2.11.29(금) 15:00	1. 제175회 임시회 회기협의 2.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 의회사무처 소관 3. 2003년도경상북도예산안 심사 - 의회사무처 소관	제 1 차 원안가결 원안가결

<기획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2.12. 3(화) 11:00	1. 2003년도경상북도지방채발행동의안 2. 경북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지방공사경상북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 조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 1 차 원안가결 “ “ “ “
12. 4(수) 11:00	1. 2003년도경상북도예산안 심사 - 기획관리실, 감사관실 소관	수정가결
12. 5(목) 11:00	1. 2003년도경상북도예산안 심사 - 공보관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수정가결 원안가결

<행정사회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2.11.21(목) 17:40	1. 경도대학 행정사무감사 관련 증인·참고인 채택	제 1 차
12. 3(화) 11:00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2. 2003년도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 계획안 3. 2003년도경상북도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4. 2003년도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운용계획안 5. 2003년도경상북도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6. 2003년도경상북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7. 2003년도경상북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8.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제 2 차 원안가결 “ “ “ “ “ “ “
12. 4(수) 11:00	1. 2003년도경상북도예산안 심사 - 자치행정국 소관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견	수정가결 원안가결
12. 5(목) 11:00	1. 2003년도경상북도예산안 심사 - 경도대학,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수정가결

<교육환경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2.12. 3(화) 11:00	1. 2003년도경상북도예산안 심사 - 보건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소,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 2003년도경상북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3. 2003년도경상북도포플라장학기금운용계획안	제 1 차 원안가결 “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12. 4(수) 11:00	1. 2003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심사	제 2 차 수정가결
12. 5(목) 11:00	1. 2003년도경상북도예산안 심사 - 보건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소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2. 경상북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 례중개정조례안 3. 경북체육고등학교수영장사용료징수조례 중개정조례안 4. 2003년도경상북도예산안 심사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5.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견	제 3 차 수정가결 원안가결 “ “ ”

<농수산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2.12. 4(수) 11:00	1. 2003년도경상북도예산안 심사 - 농수산국 소관 2. 2003년도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	제 1 차 수정가결 원안가결
12. 5(목) 11:00	1. 2003년도경상북도예산안 심사 - 농업기술원 소관 2. 2003년도경상북도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운용계획안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견	제 2 차 수정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산업관광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2.12. 4(수) 11:00	1. 2003년도경상북도예산안 심사 - 경제통상실 소관 2. 2003년도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3. 2003년도경상북도중소기업근로자자녀장학 기금운용계획안	제 1 차 수정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12. 5(목) 11:00	1. 2003년도경상북도예산안 심사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 2003년도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 3. 2003년도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4. 2003년도경상북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안 5.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견	제 2 차 수정가결 원안가결 “ “ “ “ “

<건설소방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2.12. 4(수) 11:00	1. 2003년도경상북도예산안 심사 - 건설도시국 소관	제 1 차 원안가결
12. 5(목) 11:00	1. 2003년도경상북도예산안 심사 - 소방본부 소관	제 2 차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2.12. 9(월) 10:00	1. 2003년도경상북도예산안 심사 - 기획관리실, 감사관실, 공보관실 공무원교육원, 경도대학, 경제통상실소관	제 9 차
12.10(화) 10:00	1. 2003년도경상북도예산안 심사 - 자치행정국, 농수산국, 농업기술원소관	제 10 차
12.11(수) 10:00	1. 2003년도경상북도예산안 심사 - 보건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사회복지여성국,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의회사무처 소관	제 11 차
12.13(금) 20:00	1. 2003년도경상북도예산안 심사 2. 2003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심사	제 12 차 수정가결 “

Ⅲ. 의안 처리

1. 본회의

구 분		부의	심 의 · 의 결			철회	계류	비고	
			계	가 결					부결
				원안	수정				
계		31 (59)	31 (59)	27 (53)	4 (6)				
조 례 안	소계	10 (20)	10 (20)	9 (19)	1 (1)				
	의 회 제 안	(1)	(1)	(1)					
	도지사 제 출	8 (15)	8 (15)	7 (14)	1 (1)				
	교육감 제 출	2 (4)	2 (4)	2 (4)					
예 산 · 결산		2 (6)	2 (6)	(3)	2 (3)				
동의 · 승인		19 (22)	19 (22)	18 (21)	1 (1)				
건 의 안		(3)	(3)	(3)					
결 의 안		(3)	(3)	(3)					
기 타 안		(5)	(5)	(4)	(1)				

※ •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 의안 내용은 붙임 부록에 게재

2. 위원회

위원회	회부	심 사 · 의 결								철회	계류
		가 결							부결		
		계	조례	예산 결산	동의 승인	건의	결 의	기 타			
계	28 (61)	31 (59)	10 (20)	2 (6)	19 (22)	(3)	(3)	(5)			(2)
의회운영	(3)	(3)	(1)			(1)	(1)				
기 획	2 (6)	5 (6)	4 (4)		1 (2)						
행정사회	8 (14)	8 (13)	1 (6)		7 (7)						(1)
교육환경	4 (6)	4 (6)	2 (4)		2 (2)						
농 수 산	2 (5)	2 (5)	(1)		2 (3)	(1)					
산업관광	7 (10)	7 (9)	2 (3)		5 (6)						(1)
건설소방	3 (5)	3 (5)	1 (1)		2 (2)		(1)	(1)			
특 별	2 (6)	2 (6)		2 (6)							
본회의	(6)	(6)				(1)	(1)	(4)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IV. 민원처리

1. 청 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	-	-	-	
누 계	-	-	-	-	

※ 누계는 제7대 의회 실적

2. 진 정

가. 접 수

위원회별	계	행정	사회 문화	교통	건설	교육	경제	환경	농어업	기타
계	2 (18)			1 (4)	(1)	(1)	(1)	1 (3)	(3)	(5)
의회운영										
기 획	(1)									(1)
행정사회	(1)			(1)						
교육환경	1 (3)					(1)		1 (2)		
농 수 산	1 (4)			1 (1)	(1)				(2)	
산업관광	(3)						(1)			(2)
건설소방	(6)			(2)				(1)	(1)	(2)
특별위원회										

※ ()안은 7대 의원 누계

나. 처 리

위원회별	처 리					처리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이송	
계	6 (17)	6 (17)				1 (1)
의 회 운 영						
기 획	(1)	(1)				
행정사회	(1)	(1)				
교육환경	1 (3)	1 (3)				
농 수 산	2 (4)	2 (4)				
산업관광	2 (3)	2 (3)				
건설소방	1 (5)	1 (5)				1 (1)
특별위원회						

※ ()안은 제7대 의회 누계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제 출 자 (제출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부일)
경상북도교육감 (2002. 11. 9)	경북체육중고등학교수영장사용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환경 (2002. 11. 9)
경상북도교육감 (2002. 11. 9)	경상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교육환경 (2002. 11. 9)
경상북도교육감 (2002. 11. 9)	2003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교육환경 (2002. 11. 9)
경상북도지사 (2002. 11. 11)	2003년도경상북도지방채발행동의안	기 획 (2002. 11. 11)
경상북도지사 (2002. 11. 11)	2003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각상임위 (2002. 11. 11)
경상북도지사 (2002. 11. 11)	경상북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	기 획 (2002. 11. 12)
경상북도지사 (2002. 11. 11)	2003년도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	행정사회 (2002. 11. 12)
경상북도지사 (2002. 11. 11)	2003년도경상북도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행정사회 (2002. 11. 12)
경상북도지사 (2002. 11. 11)	2003년도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운용계획안	행정사회 (2002. 11. 12)

경상북도지사 (2002. 11. 11)	2003년도경상북도장애인복지기금운용 계획안	행정사회 (2002. 11. 12)
경상북도지사 (2002. 11. 11)	2003년도경상북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행정사회 (2002. 11. 12)
경상북도지사 (2002. 11. 11)	2003년도경상북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행정사회 (2002. 11. 12)
경상북도지사 (2002. 11. 11)	2003년도경상북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교육환경 (2002. 11. 12)
경상북도지사 (2002. 11. 11)	2003년도경상북도포플라장학기금운용 계획안	교육환경 (2002. 11. 12)
경상북도지사 (2002. 11. 11)	2003년도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 계획안	농수산 (2002. 11. 12)
경상북도지사 (2002. 11. 11)	2003년도경상북도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농수산 (2002. 11. 12)
경상북도지사 (2002. 11. 11)	2003년도경상북도중소기업근로자자녀 장학기금운용계획안	산업관광 (2002. 11. 12)
경상북도지사 (2002. 11. 11)	2003년도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 계획안	산업관광 (2002. 11. 12)
경상북도지사 (2002. 11. 11)	2003년도경상북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 계획안	산업관광 (2002. 11. 12)

경상북도지사 (2002. 11. 11)	2003년도경상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건설소방 (2002. 11. 12)
경상북도지사 (2002. 11. 11)	2003년도경상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건설소방 (2002. 11. 12)
경상북도지사 (2002. 11. 11)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행정사회 (2002. 11. 12)
경상북도지사 (2002. 11. 11)	경상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소방 (2002. 11. 12)
경상북도지사 (2002. 11. 19)	경상북도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관광 (2002. 11. 19)
경상북도지사 (2002. 11. 19)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에 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	산업관광 (2002. 11. 19)
경상북도지사 (2002. 11. 20)	광역시자치단체자치정보화조합설립에따른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	기 획 (2002. 11. 20)

2. 위원회 활동사항

위원회	일시(기간)	장 소	활 동 내 용
건설소방	2002.11. 5 ~11. 7	제주도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현장 방문
산업관광	2002.11.11 ~11.12	제주도	전국체전 경북선수단 격려

3. 기타사항

○ 제17회 경상북도장애인 합동결혼식

- 일 시 : 2002. 11. 4(월) 12:30
- 장 소 : 안동시민회관
- 참 석 : 김선중 부의장

○ 전국체전참가선수단 결단식 및 경북체육중고 체육관 개관식

- 일 시 : 2002. 11. 4(월) 14:00
- 장 소 : 경북체육중고
- 참 석 : 최원병 의장(격려사)

○ 우유요리강습회 및 전시회

- 일 시 : 2002. 11. 5(화) 14:00
- 장 소 : 경주 교육문화회관
- 참 석 : 최원병 의장(축사)

○ 한국국학진흥원 문중유물특별기획전 개막식

- 일 시 : 2002. 11. 5(화) 15:00
- 장 소 : 한국국학진흥원
- 참 석 : 김선중 부의장(테이프컷팅)

○ 경북농수산물 일본특판전

- 일 시 : 2002. 11. 5 ~ 11. 9
- 장 소 : 일본
- 참 석 : 농수산물위원회 양재경 의원

○ 민주평통 경북지역 대표회의

- 기 간 : 2002. 11. 6(수) 14:00
- 장 소 : 영천시민회관
- 참 석 : 최원병 의장

○ 한국스카웃연맹 창립56주년 기념식

- 일 시 : 2002. 11. 7(목) 11:30
- 장 소 : 경주 교육문화회관
- 참 석 : 최원병 의장

○ 제10회 경상북도지체장애인 지도자대회 개회식

- 일 시 : 2002. 11. 7(목) 14:00
- 장 소 : 문경관광호텔
- 참 석 : 김선종 부의장(축사)

○ 전국시·도의장협의회

- 일 시 : 2002. 11. 9(토) 10:30
- 장 소 : 제주 크라운호텔
- 참 석 : 최원병 의장

○ 전국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

- 일 시 : 2002. 11. 9(토) 11:00
- 장 소 : 제주도의회
- 참 석 : 손규삼 운영위원장

○ 제38회 전국체전 개회식 및 경북선수단 격려

- 일 시 : 2002. 11. 9 ~ 11. 10
- 장 소 : 제주종합경기장, 종목별 경기장
- 참 석 : 최원병 의장, 정무웅 부의장

○ 제40주년 소방의날 기념행사

- 일 시 : 2002. 11. 11(월) 10:00
- 장 소 : 안동소방서
- 참 석 : 김선종 부의장(축사)

○ 제7회 농업인의날 기념식

- 일 시 : 2002. 11. 14(목) 11:00
- 장 소 : 영천시민회관
- 참 석 : 최원병 의장(축사), 농수산위원

○ 제4회 경상북도학생 축제

- 일 시 : 2002. 11. 19(화) 13:30
- 장 소 : 안동체육관
- 참 석 : 김선종 부의장(축사)

VI. 도정질문

□ 제1차 본회의

권 준 택 의원(교육환경위원회)

평소 존경하는 최원병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먼저 본의원에게 도정질문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00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교육발전에 애를 쓰시는 이의근 지사님과 도승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경북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나날이 발전의 주도적 역할과 혁신의 주역이 되고자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북지역은 중앙과의 격차도 커지고 있고, 경제력도 심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난 여름 사상 유래가 없는 태풍과 호우가 겹쳐 아직도 많은 수재민들은 겨울철인 요즘에도 차가운 컨테이너 속에서 지내고 있으며, 업친데 겹친 격으로 한·칠레간 FTA 협정체결에 따라 우리 도민들은 너무나 많은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분발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면서 평소 도정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야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사항이 우리 경북의 발전과 도민화합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대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미리 당부를 드립니다.

첫째, 휴경농지 보상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휴경보상제 최근 쌀의 재고량이 증가함에 따라 쌀의 생산량을 조정하고자 휴경한 논에 대하여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불하는 제도로써 쌀 소득보전 직불제를 우선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년전만 하더라도 일선 시·군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다수확 품종을 심으라고 권장을 해 놓고 지금 와서는 쌀이 남아도니까 품질로 승부를 걸라, 나아가서는 아예 멸절한 논을 놀리라고 하고 있어 정부의 농정정책은 농민들의 불신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타결 이후 쌀 산업구조개선 및 쌀 산업의 경쟁력제고라는 숙제를 정부가 계속 미루어 오면서 빚어진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내의 쌀 경쟁력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쌀의 가격경쟁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시중에 80kg 한가마 소비자가 가격은 16여만원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밥 한공기 짓는데 쌀 120g이 소요된다고 보면 밥 한공기의 값어치는 255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다방의 커피 한잔 값의 1,500원, 햄버거 한 개 1,500원, 제과점 빵 1개에 비하면 낮은 가격입니다.

게다가 올해 정부의 농가 소득보전액은 농정예산의 3%에 불과하여 EU는 50%, 미국은 30%로 보전해 주고 있는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우리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농가소득보전이 너무나 미약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의 잘못된 농정정책으로 2002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식량자급은 56.8%에 불과하여 쌀의 자급도 106.5%를 제외하면 다른 주곡의 자급도는 보리쌀 77.2%, 옥수수 3.1%, 콩 28.1% 등에 지나지 않아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제2의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밀의 경우는 0.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작물들은 거의 다 수입에 전량 의존하고 있어 자칫 수출국의 식량 무기화라는 위기에 처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촌과 쌀 농사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정서적·경제적 토대이자 뿌리이며 농민과 쌀 농사를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쌀의 감산을 무조건 농민들에게 강요하기 보다는 대체작목의 개발과 농업지원책을 먼저 농민들에게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도지사의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우리 농가가 농촌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가소득 직불제나 휴정보상제 등을 대폭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태풍 「루사」로 인해서 벼 수확 자체를 아예 포기한 농가들은 봄에 미리 받아 쓴 추곡수매 약정 선급금에다 높은 이율의 위약금을 갚을 길이 막막하여 우리 농민들은 이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결국 수해를 당한 경북의 많은 농민들은 선급금 상환을 위해 빚을 내어 갚아야 할 사형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가노인 및 독거노인 복지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 연장과 함께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노인인구의 상대적 비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0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전체인구의 7.3%를 차지하여 본격적인 고령화사회로 진입을 하였으며, 우리 경상북도의 노인인구도 현재 3,464세대 3,55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년 고령화 추세가 높아지는 것과 더불어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부양의식이 변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젊은 층의 도시이동으로 인해 재가노인의 문제는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재가복지시설 확대가 시급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노인인구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수용시설 복지비용의 10~20%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여 도가 가능한 재가노인 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경북의 농촌실정에 맞는 재가노인 복지시스템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각 분리 운영되고 있는 주민, 복지시설, 행정을 상호 연계하여 삼위일체적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가노인 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 자원봉사자를 육성하여 재가노인 복지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더불어 각 마을마다 있는 마을부녀회를 포함하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중심의 권역별

재가복지센터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실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히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의 경우 한끼의 식사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자원봉사자의 활용과 푸드뱅크(FOOD BANK)의 활성화를 통하여 각 지역의 복지관 및 경로당을 중심으로 집단급식을 하거나 식사배달 서비스를 활성화 하실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독거노인에게 식사를 제공할 경우 예산의 확보문제, 자금의 각출문제, 별도의 예산으로 지원할 경우 이중적인 수혜라는 문제를 따질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을 통한 도 지원에서 벗어나 민간단체 혹은 시민자원봉사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무원교육원 운영 문제 및 도민연수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1998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정부 조직개편 추진지침 및 지방공무원 교육기관 정비방침에 의거 전국 지방교육기관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정비차원에서 1998년 10월19일자로 공무원교육과 도민교육원이 통합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경상북도의 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교육과 도민연수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21세기 디지털시대로 진입한 지금에도 도민연수교육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행할 만큼 그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는 것입니다.

소위 정보화시대로 접어든 지금에 있어서도 생업에 종사하는 도민들을 일시에 소집하여 아날로그적인 교육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도민교육 중에서 안보교육반의 경우 주민신고 계도요원을 대상으로 현지교육 300명, 소집교육 240명이라고 되어있는데 과연 현지에서 300명이나 되는 인원을 어디에서 선정하여 교육을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도민 소양교육의 경우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1년에 4회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회당 참석인원이 300명에 달하여 연인원 1,200

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시행되는데 과연 도민들이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이러한 교육에 자발적으로 나온다고 보시는지요?

이러한 교육계획에 따라 시·군에서는 도민연수교육에 참석할 교육대상자를 제대로 선발하지 못하여 일부 교육 담당공무원은 자기집안의 식구를 교육에 대신 보내거나 심지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취로사업자를 대신 보내기도 하는 등 실정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450명의 재향군인회원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예절반을 1년에 3회로 나누어 교육한다고 되어있는데 재향군인회원과 전통문화예절은 무슨 교육의 필요가 있는지 본의원의 생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전국의 광역시·도에서 도민연수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곳은 충청북도와 경상북도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원에서 도민연수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지방공무원교육 훈련법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그런 조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고 도민들의 참여도가 낮은 도민연수 교육에 들어가는 예산과 인력을 당면 도정과제의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서로 직제를 바꿀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전국체육대회와 관련하여 경북의 체육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9일부터 15일간 제주도에서 제83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경북선수는 1,175명의 선수와 임원 376명으로 구성된 1,551명이 대표로 구성되어 모두가 한마음으로 열심히 선전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랑스럽게도 우리 경북은 지난해 12위에서 6위로 수직 상승하여 5년 만에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경기에 참여한 모든 선수와 임원들의 노고도 컸지만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평소 내실있게 지원해온 경상북도와 체육회가 한마음이 되어 최선을 다 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올해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2003년도 체육진흥사업에서도 우수선수 유치, 미보유 실업팀의

창단추진, 꿈나무 육성사업 확대 실시, 하키, 롤러, 사격 등의 특수종목 선수 및 체육시설 확보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살펴보면 우리 경북체육의 기본방향은 다분히 우수 선수 유치를 통한 전시행정 체육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총체적인 발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가 균형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나갈 때 이루어지듯이 스포츠 역시 몇몇 특정 종목만을 집중 육성하거나 우수선수 위주로 하는 체육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생활체육과 우수선수의 중심의 엘리트 체육은 서로 조화롭게 균형을 맞추어야만 합니다.

더욱이 생활체육의 활성화는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비의 절감이라는 경제적 효과까지 거둘 수 있습니다. 일찍이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건강한 복지사회의 초석은 바로 국민 여러분의 운동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생활체육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스포츠에 관한 한 중앙정부는 국제스포츠 행사나 국가간 교류체육만을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 위주로 생활체육에 주력하도록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러한데도 우리 경상북도의 생활체육 현실은 오히려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고 우수선수 즉, 엘리트스포츠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음은 잘못된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도지사께서는 현재 엘리트체육 육성에 소요되는 예산을 줄이고 도민모두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생활체육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생활체육시설과 장소를 획기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도민들로 하여금 보는 체육이 아닌 하는 체육으로 소수정예보다는 다수가 참여하는 생활체육으로 전환함으로써 도민들의 실질적인 건강증진 도모와 복지를 추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민의 요구와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스포츠활동 프로그램의 전문화와 다양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활동 중에 있는 각종 생활체육 클럽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모든 외교의 출발점은 체육이라는 점에서 전향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우리 경상북도와 북한과의 생활체육 교류를 추진하여 남북통일을 위한 초석이 되도록 고려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 경북의 각종 생활체육과 북한의 시·도 단위 체육지도위원회 시·군 단위의 체육부락 등과 함께 생활체육 교류를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남북통일의 물고름 틈은 물론이고 나아가 동해선이 완공될 경우 경제협력의 출발점으로 삼으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와 시·군 및 시·군간의 인사교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와 시·군 및 시·군간의 인사교류는 공무원의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안목을 넓히고 도정 전반에 대한 공무원의 이해를 높일 뿐 아니라 담당업무를 반복 수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편협성을 시정함과 동시에 보다 폭넓은 행정문화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사교류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공무원의 자기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인사교류가 없는 경우 조직의 비유연성을 가져와 비효율성을 낳게 마련이고 조직간의 심각한 이기주의를 조장하여 공무원의 능력에 따른 효율적인 배치를 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경북은 1995년도의 경우 도와 시·군 및 시·군간의 5급이상 인사교류가 220명이던 것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부터 점차 줄어들어 2000년에는 겨우 56명에 대해서 인사교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해마다 도와 시·군간 또 시·군 상호간의 인사교류가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차례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주문한 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 첫 번째, 1대1의 체계

적이고 정기적인 인사교류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인사교류제도는 소수공무원에게만 이루어지고 있어 인사가 있을 때마다 공무원 상호간 선의의 경쟁보다는 인사청탁을 하게 되는 등의 문제점을 유발하여 불신과 불만이 팽배해짐으로써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인사교류가 소위 말썽군의 방출 등으로 인식되는 부정적인 경향을 탈피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원이면 누구나 인사교류의 대상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인사교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승진요건에 인사교류 경험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두번째로 현실적 제약들을 감안한, 현실적이면서도 비강제적인 방안으로서 인사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안으로서 인사교류를 승진요건에 포함하고 이동에 따른 적절한 직급을 선정하고 또 교류 후의 경험이 조직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유의할 것은 인사교류의 실시는 무엇보다 형평성과 투명성이 중요시되어야 하며 인사교류가 상벌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서야 할 것입니다.

셋째, 부시장·부군수의 인사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지방직 공무원인 부시장·부군수를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부시장·부군수의 인사를 하기 위해서 도에서 당해 시장·군수의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당해 시장·군수가 특정인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되어 공무원간 내부갈등이 발생하는 등 도의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방직 공무원인 부시장·부군수를 도의 조정을 거치지 않고 시장·군수가 당해 시·군의 공무원을 임명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방직 공무원인 부시장·부군수를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하여 도지사의 인사조정권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 영 서 의원(농수산위원회)

먼저 본의원에게 도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존경하는 김선중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시외버스 운행의 문제입니다.

현재 경북도내에는 17개 시외버스 회사가 운행되고 있으나 매년 10억원의 적자로 인해 도민의 혈세로 많은 자금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31번국도 봉화 소천에서 태백까지 30km구간, 36번국도 봉화 소천에서 울진 구간, 이 두곳만 하여도 시내버스는 하루에 2, 3회정도 운행되고 있으며, 31번국도 소천에서 태백까지는 버스 자체가 없는 실정입니다.

얼마전 8월초순까지만 하여도 직행버스가 곳곳에 승하차 시켜주어 그나마 불편이 적었으나 지금은 CCTV를 부착하였다는 이유 하나로 이곳을 지나는 직행버스는 지역주민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고 말았습니다.

농촌지역도 보편적으로 자가용이나 화물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중에 연세 많으신 노인과 부녀자들은 국도를 걸어서 버스 승강장까지 가다가 보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뒤따르며, 이는 비단 봉화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경북도내 모든 오지지역의 공통된 현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본의원이 집행부 교통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담당자의 답변에 의하면 버스 업체에서는 승강장이 아닌 곳에는 직행버스를 세우지 못하도록 CCTV까지 부착하도록 하였는데 어떻게 또다시 정책을 바꿀 수 있겠는가 하는 난색을 표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민편의에 의한 정책이라면 작은것 하나부터라도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함께 이제는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로 시내버스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으며, 버스업체에서는 승객이 줄어들어 적자가 누적되므로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무수히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현재 운행중인 대형버스를 소형 미니버스로 지역실정에 맞게 대체운행하여 업체의 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여나갈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태풍 「루사」는 우리 의원들 도정질문 중 단골메뉴로 등장하지만 본의원도 이 부분을 거론할까 합니다. 지난 8월6일과 7일 양일에 걸친 북부지역 집중호우와 8월30일부터 9월1일 태풍 「루사」가 한반도를 강타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공공시설 등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특히 태풍 「루사」로 인하여 김천, 영양, 영덕, 울진을 비롯한 우리 도의 대부분 지역에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김천지역의 경우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97년11월 수립하면서 빈도 100년을 기준으로 224.6mm로 계획하였으나 5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많은 수해를 당한 것을 보면 10년 앞도 못 보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정말 너무 졸속한 행정인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98년7월31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상주지역의 수해를 경험하고도 100년 빈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방의 유실지역을 보면 곡선부분만 유실되었으며 그것도 하천의 곡선각도가 심한 곳이 유실되었는데 그 원인은 하천곡선을 감안하지 않고 제방을 시공할 때 제방높이를 하천직선 부분이나 곡선부분을 동일하게, 즉 종단도가 일정한 구배로 설계 시공되었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도로는 곡선반경을 감안하여 구배를 높게 설계 시공하는데 하천만은 유일하게도 곡선도를 무시하고 설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곡선부분은 물의 유속을 감안하여 제방고를 높여 주든가 하천폭을 직선부분보다 넓게 시공하고 물의 압력을 크게 받는 부분은 콘크리트 옹벽으로 설계 시공함으로써 항구적인 완벽한 공사가 되게 설계 시공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과 같은 재해는 물론 자연재해도 있겠지만 제방이 붕괴된 382곳 중 90% 이상이 곡선부분이다 보니 예고된 인재인 곳만도 한두 곳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현재와 같이 설계 시공한다면 곡선부분의 하천 제방은 항상 예고된 재해지역일 수 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재해로 물이 범람한 148개 교량은 앞으로도 상습적인 범람교량이 될 것인데 이와 같은 교량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명백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내 교량 694개소 중 보수를 하여야 하는 교량은 95개소로 알고 있는데 이를 시공 연대별로 보면 60년대 10개소, 70년대 36개소, 80년대 35개소, 90년대 이후 14개소로 파악되었습니다. 90년대 이후 시공된 것이 14개소나 된다는 것은 부실공사라든지 설계에서부터 잘못이 있다 하겠습니다. 10년도 되지 않은 교량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지사께서는 172회 정례회에서 항구적인 수해복구를 한다고 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본의원이 제시한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항구적인 복구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실공사를 부르는 동절기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은 10월2일 첫서리가 내렸고 10월22일 영하 2도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관계기관에서는 수해가 발생한 어느 지역도 복구 공사를 발주한 곳이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공사를 하기 좋은 계절은 다 보내버리고 추위가 닥쳐오는 11월 초순부터 소규모 공사 수천 건이 무더기로 발주되고 있습니다. 이 소규모 공사는 연말 아니면 내년 3월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내년 농사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공사를 겨울에 발주하는 것은 정부에서 부실공사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빠른 시일 안에 복구비를 지원 받아서 시공하여야 할 사업이 겨울이 되어서 발주 시공하고 있는

모습은 10년전이나 20년전이나 변한 곳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콘크리트 공사는 영하권으로 떨어지면 시공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극장 발주하는 것은 동절기 공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는데 어떻게 완벽하고 항구적인 복구를 한다는 것인지 본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렇게 많은 공사가 한꺼번에 발주되다가 보면 일선 시군의 기술직 공무원은 한정되어 있고 설계, 현장인수, 감리, 준공검사 등 일손이 모자라는 상태에서 시공 감리는 엄두도 못내는 형편이어서 완벽한 공사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공사현장을 보면 부실공사는 소규모 업체, 특히 영세업체들로부터 시작된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일선 시군에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명예감독관을 선정하여 관리체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명예감독관은 이장, 지도자, 수해지역 주민들로 한정되어 있어 이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분들도 아닌데 과연 올바른 관리감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부족한 공사 관리감독을 위하여 퇴직 기술공무원이나 건설 유경험자를 자원봉사자로 모집하여 명예감독관으로 지정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철새처럼 이동하는 건설업체의 변동상황을 살펴보면 봉화, 김천 지역 등 수해지역은 8월부터 우후죽순처럼 건설업체가 생겨났으며 이들 업체들은 공사 수주를 위해 수해지역에 너도나도 몰려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년 8월1일부터 10월15일까지 불과 두달보름만에 일반 건설업체 소재지 변경상황을 보면 81개 회사중 김천이 17, 포항이 9, 성주가 8, 영양이 5개소로 나타났으며, 특히 피해가 심한 김천지역이 20% 이상 차지하고 있음은 수해지역을 찾아 철새처럼 이동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특히 이러한 현상은 전문건설업체는 더욱 심한 편인데 이동업체의 신규 또는 주소지 변경을 보면 총 271개사중 김천이 24, 봉화가 18, 울진이 18, 성주가 19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실공사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 업체들은 또 한시적으로 재해지역을 찾아다니며 신설 또는 이전하였다가 공사가 끝나면 자연 폐업 또는 이전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게 되면 공사 완공후 특히,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 또 경험없는 신규업체 난립으로 인한 부실, 공사완공후 하자 발생시 누구에게 하자보수를 하도록 할 것인가 걱정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문건설회사 1개 업체의 연간 관리비가 4~5,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유령회사들이 과연 오래 운영될 수 있다고 보는지, 앞으로 신규업체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명백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소하천의 정비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소하천은 4,030개소, 7,316km에 달하고 있는데 이 중 정비가 된 곳은 3,350km로 4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하천은 수해가 발생하면 하천정비가 되어 있는 곳은 복구가 가능하고 정비가 되지 않은 토사부분은 언제든지 수해지역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비가 되지 않은 토사부분의 하천복구는 항상 토사로 땀질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그 다음해에 조금만 비가 와도 토사유출로 다시 수해를 입게 됩니다.

소규모 수해는 항구복구도 되지 않으며, 가뜰이나 어려운 농민들은 자력으로 복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정비가 되지 않은 소하천이라도 수해의 발생시 항구적인 복구가 되게끔 집행기관에서는 많은 배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의 사업비 구성비율을 보면 발기반정비사업과 농경지정리사업의 경우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이고, 도로공사는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인데 비하여 소하천정비사업은 국비 50%, 시·군비 50%이고, 치수·도시토목사업과 지역 현안도로사업은 도비 50%, 시·군비 50%이며, 꼭 필요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도수로, 농로, 마을진입로 사업은 도비 30%, 시·군비 70%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도 국·도비 비율을 80%로 증액하여 어려운 농촌경제에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많은 개선 노력이 있어야겠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지역 뿐만 아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에서는 도비 30%, 시·군비 70% 부담 사업을 지원한다고 하여도 지원하는 날부터 지방비 부담이 걱정스러울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도내 중부권만 하여도 양파재배, 마늘재배 후 벼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일모작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도내 북부지역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재정형편이 양호한 시·군과 동일한 비율로 지원하다 보니 북부지역의 농촌경제는 날이 갈수록 폐허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지사께서는 말로만 균형개발을 부르짖지 말고 실제 지역형편에 맞게 지원하여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역균형개발이 되도록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할 생각은 없는지? 특히 봉화지역의 경우 10년 전만 하여도 인구가 7~8만 정도 되던 것이 이제는 4만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쏟고 있는 실정이지만 농촌을 떠나는 사람은 날로 늘어나는데 도지사께서는 북부지역의 균형개발을 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 상 조 의원(건설소방위원회)

본의원은 먼저 경북도가 지난 10월11일부터 23일까지 13일간 개최된 2002경북세계농업한마당에 최종 성과물로 채택한 경북선언문을 11월 20일 스위스 제네바 내에 소재한 WTO사무국에 직접 전달하여 WTO 협상 때 경북선언문 수용을 추진케 함으로써 경북이 세계농업문제 해결에 앞장선 데 대하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북도의 농업현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북은 아시다시피 농도입니다. 도민의 24% 정도가 농업인구이며 면적은 29만5,191ha로써 전국의 두번째입니다. 경북의 농업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농가부채는 전국 평균치를 웃돌고 있고 농산물의 수출도 갈수록 줄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경북도의 자료에 따르면 농가당 경지면적은 1.3ha로 타 시·도 1.39~1.46보다 작아 상대적으로 영세농가의 비율이 높고 농가부채도 호당 2,151만원으로 전국 평균 2,003만원보다 높으며, 또한 지난 '99년 1억6,400만 달러이던 농산물 수출금액은 2000년에 1억3,300만 달러, 지난 2001년에는 1억2,500만 달러로 계속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인구의 경우 지난 '90년 110만명에서 지난해에는 62만명으로 연평균 4.1%씩 줄었으며 60세 이상의 농가도 '90년 20%에서 지난해에는 36.5%로 전국 평균 33%보다 높아 타 시·도에 비해 급속도로 노령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쌀생산의 경우 전국에서 4위인 13%를 점유하고 있고 사과, 포도 등은 전국생산량의 1위이며 전국 점유율 60%와 39%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주요 과일은 완전히 무관세할 경우 연간 2,800억원의 농가피해가 예상되지만 사과, 배가 양허품목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농산물로 상당한 유예기간을 인정받아 10년 후 연간 450억 가량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앞으로 농민은 갈 곳이 없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우리 도의 이 어려운 농업현실에 대해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묻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북도는 농도입니다. 지난 10월24일 우리나라와 칠레간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3년만에 타결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물론 국회의 인준이라는 절차는 남아 있지만 정부에서는 오랜 숙원이었던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이 우여곡절 끝에 타결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FTA 체결국가의 대열에 들었다고 좋아하고 있지만 우리 농촌의 농민들은 울고 있습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여·야 대통령후보와 정당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동의만을 남겨두고 있는 것은 농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칠레는 어떤 나라입니까? 칠레는 한 마디로 농업대국으로 특히 포도, 사과, 자두, 키위 등 과일류의 수출은 세계 1~3위를 다툰 정도입니다. 총 수출액 중 농산물 수출액은 30%나 되고 농산물 무역에서만 30억 달러 흑자를 내는 나라입니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칠레산 포도의 수입가격이 우리의 절반 수준인 상황에서 계절관세 기간 동안 대량으로 수입된다면 포도가격의 하락을 초래하게 되고 우리 농업 특성상 사과, 배 등의 폭락으로 결국 과수농업 전반의 붕괴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우리 농산물의 피해액은 연간 450억에서 500억 정도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계는 위생 및 검역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연간 4조원 이상의 피해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한·칠레 무역협정으로 포도, 복숭아, 감귤 등도 치명상을 입을 것이고 사과, 배도 검역이 풀리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것이 농민들의 예상입니다.

이번 협정에서 양허품목에서 사과, 배가 제외되었다고는 하지만 포도의 경우는 11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계절관세를 통해 10년간

균등비율로 관세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농림부가 발표한 피해 현황을 보면 과수분야의 연간 피해액을 60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포도의 경우는 204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북의 포도재배 면적이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생산량의 1위입니다. 가장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포도의 경우는 전체 재배면적의 32%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경북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자명한 사실이기에 과연 어떤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지 도지사님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 과수분야 예산을 보면 포도 품질개선 등 13개 사업에 53억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및 품질관리시설에 27억원, 저온저장고 설치와 생산단지 조성 등 16개 사업에 128억원, 농산물브랜드화와 유통장비 표준화에 74억원 등 282억원을 책정해 놓고 있지만 구체적인 피해 보상과 지원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조금이라도 농민의 아픔을 달래주고자 지난 회기에 한·칠레 무역협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건의서를 채택하여 관련기관에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관련부서인 농림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농민의 아픔을 알고나 있는지, 지사께서는 우리 도를 농도라 하시면서 직접적으로 우리 도민, 전 농민이 피해당사자가 되는데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지사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가장 피해를 입게 된 우리 지역의 행정책임자이신 도지사께서는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예상되는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보상방안과 지원대책에 대해 중앙부처와 어떻게 협의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지사께서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이익을 보게 되는 관련산업의 이익금의 일부를 농업부분의 피해보상을 위한 기금으로 징수하는 방안 등 농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농어민 부채상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농가부채에 관련해서 말씀드렸습시다마는 2001년 농어업인 부채경감특별조치법이 시행돼 농가부채 문제가 일시적으로 유예되었으나 특별법 제정 당시에 비해 시중 금리가 낮아져 6.5%의 지원조건은 현실성이 없을뿐더러 일시적 상환 유예로는 우리 농업현실을 감안할 때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상환시점이 내년으로 다가옴에 따라 농어민들의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부채경감법 개정이 통과되었지만 정부의 반대로 인해 당초 개정안이 대폭 수정되어 정책자금과 연대보증자금안이 3% 인하됨으로써 농가부담을 덜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경상북도 농가부채 현황을 보면 지난 '98년 농가당 1,796만원에서 2001년 2,151만원으로 20%나 증가하였고 경북지역 쌀 생산량이 9.4%나 감소한 상황에서 부채상환에 있어서 3년에서 5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농어민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결국 파산하는 농가가 속출할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농어민의 위기감은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도지사께서 도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의 대책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농어민 부채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촉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농어민 부채상환과 관련해 도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황과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구 지하철 경북연장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여 도심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대구시는 1991년부터 1998년까지 1호선 건설을 완료하였고 올해까지 대구시 외곽

도로의 연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2005년 개통 목표로 2호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지만 최초 계획 당시 경북 연장을 전제로 하지 않은 도시철도 건설이 추진됐기 때문에 경북연장 문제에 있어서 국비 75%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광역철도로 전환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SOC 중장기 민자투자 계획에 따르면 철도 사업은 경산 경전철, 서울 지하철 신분당선, 전주 경전철 23개 사업에 국비 5조3,000억을 포함한 13조3,000억을 투입키로 하였지만 기획예산처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대구~경북간 경전철 타당성 조사결과 경산 시내까지의 일부 구간만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민간자본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근거하여 국고 75%를 지원받는 광역철도사업이 현재 수도권 6개 지방권인 부산~울산간 1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특별법에 대구도시권의 범위에 경산과 영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지하철과 환승 연결할 수 있도록 대구, 경산시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상북도가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대선을 앞두고 경산 및 영천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의 대구지하철 경산 연장과 대구선의 복선 전철화계획이 전환점을 맞고 있어 대구지하철 연장노선을 KDI가 제시한 경전철 대신 중전철로 해야 된다는 것과 대구선 복선 전철화 계획도 모두가 국비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동대구~영천구간이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이 난 이상 지금까지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내년에도 건교부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지사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도지사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대구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대구권 광역도시계획은 계획목표 및 공간구조 구상과 개발제한구역 조정 등 크게 두 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답 등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30년 동안 묶여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토지가격이 저렴하여 지역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클 뿐만 아니라 토지거래마저 성립되지 않고 있어 여러 가지 제한을 받는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생활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계획 확정 과정은 도시계획법의 관련 규정에 공청회 개최, 시장·군수의 의견 청취, 시·도의회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과정을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있어서는 2002년 11월말 건교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위임하여 해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집단취락의 우선 해제와 조정 가능지역,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존치되는 취락지에 대한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결정난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현안 몇 가지만을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농어촌 현실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책 추진에 있어서 행정편의적인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역현실에 적합한 정책을 개발해 지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부보조 등 지원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본의원은 확신하는데 지사의 고견은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최근 들어 언론보도에 따르면 학교 신설문제를 둘러싸고 학부모들의 자녀 등교거부 사태가 빚어지는 등 경북도내 곳곳에서 학부모와 교육당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시 북구 장성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초등학교 위치 관계로 집단시위를 벌이고 포항 남구지역에 고교를 설립하는 계획에 부지선정 과정에서 학부모들과의 마찰로 1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고 상주시에는 성동동에 아파트 주민들이 감정가가 턱없이 낮다고 주장하는 땅 주인들과 마찰을 빚어 당초

계획을 연기할 수밖에 없듯이 교육행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지난 10월9일 강행하기로 했던 삼주 봉황타운 거주 신상초등 학부형들의 등교거부로 학교측과 주민들간에 갈등의 폭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승희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신상초등학교 전교생 중 95%가 삼주아파트 주민들의 자녀인데 신상초교를 진량산업단지 공단에 건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주아파트는 총 3,148세대로써 1만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96년도 당시 삼주개발이 초등학교 설립 예정지를 두고 경산시에 건축허가를 얻었고 '96년도 삼주아파트 1·2차 1,672세대가 입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량산업단지 가장자리에 계획한 초등학교를 인근에 학생 인적자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여 '97년도에 개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는 신상초교 전교생 1,100여명 중 95%인 1,000여명이 삼주아파트 자녀들인데 신상초교 주변에는 아파트나 초등학교가 없는데 왜 신상초등학교를 진량산업단지 공단 내에 건립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삼주아파트에서 신상초등학교까지의 통학거리가 2km가 넘고 진량공단네거리를 비롯해서 왕복10차선 도로인데다 고속도로를 넘어야 하는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있습니다. 삼주아파트는 서민아파트로 입주자 대부분이 젊은 부부로서 맞벌이를 하는데 아침, 저녁 승용차로 등·하교시킴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되고 승용차로 등교시키지 못한 학부형들은 등·하교의 혜택을 얻기 위해 부득이 사설학원에 보내 학원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인지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교육청 입장에서 '97년 개교하는 신상초교 설립 계획을 세우면서 아파트 쪽과 현재의 학교 위치인 공단 쪽 두 곳을 두고 저울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 쪽 구획정리지구에 학교부지 1,500평을 확보했고 삼주 봉황아파트 단지 안에도 주택법상 2,500가구 이상일 경우 학교시설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법에 따라 부지 5,000여평을 확보

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교육수요 판단인데 신상초교 개교시 아파트 쪽 1,700가구가 이미 입주했고 교육수요는 공단 쪽보다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단 쪽 선택은 백년지계를 펼치는 교육계가 탁상행정으로써 지극히 행정편의적 수단이라고 본의원은 단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교육감의 견해를 묻습니다.

넷째, 신상초교 설립에 관련부지 매입에 있어서 공단 측 부지매입비는 그당시 평당 30여만원 정도이고 아파트 측 학교설립 예정지는 평당 5~10만원 정도로써 훨씬 싼 데도 불구하고 왜 공단 측을 선택했는지 의문스럽고, 또한 현재 신상초교 주변에는 상업지역으로써 여러가지 신상초교로 인해 제약을 받아 활성화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등·하교시 초등학생의 주변환경의 열악성이 학생교육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어떠한 인성이 형성될 수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섯째, 신상초등학교 신축 시 65억 정도 공사비가 들었고 그 후 35억원 정도 들어 증축을 했는데 신축 및 증축비가 총 100억원이 든 신상초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삼주 봉황아파트에 초등학교를 설립하자니 많은 예산을 들여 건립한 신상초교가 학생이 없어 폐교해야 할 입장입니다. 삼주 봉황아파트 입주자의 증가에 따라 초등학교를 따로 건립하자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교육감께서는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섯째, 삼주 봉황아파트 초등학교유치추진위원회가 경산시, 경상교육청, 도교육청에 봉황초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하여 탄원은 했지만 검토 및 노력만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고 도교육청의 회신내용은 학교설립은 지역교육청의 중·장기 학생수용계획에 의거 개교 예정일 2년 전에 최종 결정됨으로 현재 설립계획이 확정된 바 없고 중장기 수용계획상 2006년 이후에 설립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했는데 교육감께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 성 만 의원(기획위원회)

제174회 정례회에 본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준 김선중 부의장님과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근 지사님, 도승회 교육감님.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정치형태는 정치인들이 정책을 결정하면 집행부는 정책결정을 수행해줬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도교육감이 민의에 의해서 선출되고 부터는 어느 날인가부터 정책의 결정권도 모두 자치단체장에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도민의 뜻이 받들어지고 우리 도의원들의 뜻이 받들어지는 정책결정권에 집행부와 도의회가 함께 하는 집행결정을 하자라고 먼저 주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첫째 질문은 북부권개발촉진지구의 전망에 대해서입니다.

존경하는 이의근 지사님.

북부권개발촉진, “촉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산모가 산부인과에서 분만의 고통을 겪을 때 촉진제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경북 북부권개발지역이 너무나 낙후되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나 자치단체 차원에서 하루 시급히 개발을 서둘러야 된다는 데서 북부권개발촉진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4년도 1월 달에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진흥법률에 관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낙후된 지역개발과 지역의 인구정착을 위해서, 그리고 지방민의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북부권개발촉진지구를 우리 도에서는 1996년도에 1,821만㎡를 11개 시·군 5개 지구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지정을 하고 나니 그 다음해 IMF라는 사태를 맞이해서 이 사업의 진척은 지금까지 담보상태에 빠지고 있습니다.

‘96년~2002년까지 약 3,800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 있습니다.

'96년~2005년까지 10개년 계획이 불과 3년이 남았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지사의 임기가 제7대 도의회 임기와 함께 북부권개발 10년 사업은 종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추진될 때는 약 4조 6,800억으로 시작했습니다. 국비 9,000억, 지방비 5,000억, 민자유치 3조2,000억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이 10%라면 앞으로 남은 북부권 개발촉진지구는 90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회는 오늘 북부권개발촉진지구의 진행상의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개발초기부터 난맥상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정책판단의 오류를 다시 한번 지사님 임기 중에 재검토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러 나온 것입니다.

지금 11개 시·군에서는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면서 전 시·군이 온천개발, 스키장 개발, 골프장 개발, 급기야는 종합레저타운의 개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백두대간 소백산 밑에 11개 시·군에 온천이 각 지역마다 그렇게도 다르고 수질이 그렇게도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선심성 공약의 남발과 치적에 치중하다 보니 너나없이 온천을 다 개발하고 있습니다.

문경시가 온천을 개발했고, 예천군이 온천을 개발했고, 영주시도 풍기온천을 개발했습니다. 최근에는 안동 도산온천이 다시 한번 재개장을 했습니다.

과연 북부권 주민들을 제외한 이 나라 국민들이 북부권의 그 수많은 온천들이 있다라고 누가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각 지역마다 스키장을 개발하고 골프장을 개발한다면 이 나라 전 국민이 북부권으로 레저를 즐기러 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사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지사님이 앞장을 서셔야 된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보면

국가와 시·도지사로 하여금 통제와 조정, 권한, 권고의 기능들을 담고 있습니다.

과연 경상북도 11개 시·군중에서 온천이 문경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하면 예천이나 영주, 안동, 봉화는 개발을 자제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경이 가장 뛰어난 수질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문경이 주지 역할로서 50%이상을 시비를 투자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인근의 시·군들이 출자형식으로 해서 북부권이 권역별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진행되어지고 있지 않는 스키장이나 골프장 부분들에 대해서도 가장 적지 한 군대를 선택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에는 지사님께서 통제·조정의 기능을 발휘해 달라고 본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북부권의 문제는 심각한 인구유출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준택의원님께서 미리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경상북도의 인구 감소율은 0.2%입니다. 하지만 북부권 4개시는 매년 7%의 인구 유출을 가지고 오고 있고 여섯 개 군은 1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봉화군은 매년 15%이상의 인구 유출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이 지방분권 운동입니다. 바로 북부권 개발 촉진 지구나 지방분권 이 모든 것은 유출되는 지방인구를 잡을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주민자치시대에 주민이 주인인 정신으로 과연 지방자치를 꾸려나갈 수 있겠는가, 이러한 모태에서 출발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주민들의 인구 유출이 심한 상태입니다만 특히나 심한 곳이 북부권 지역이라는 것을 지사님께서 다시 한 번 유념해 달라는 또 하나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우선 인구 유출을 막아주는 데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있겠습니다. 지방민들이 수도권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입니다. 그리고 문화 복지를 두 번째 순으로 잡았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로서 이 나라 청와대 김대중 대통령과 교육인적부

장관도 단 한번의 교육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본의원은 북부권 주민들의 복지의 열악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러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1개 시·군중에서도 봉화, 영주, 예천은 이번 연말을 기해서 4차선으로 개통이 되고 중심 상권인 영주를 중심으로 5분 상권에 인접해 있습니다. 이 3개 시·군의 인구는 합쳐서 약 23만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23만명의 인구를 가진 북부 3개 시·군에는 외람되게도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근의 안동에는 종합병원이 하나 있고 문경에 종합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는 국공립의료기관으로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또 하나는 공립상주적십자병원이 상주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지금 북부권 23만 인구는 매년 안동으로 의료비 지출이 수 억대를 넘고 있습니다. 또한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대구나 서울로 유출되는 환자의 부담이 너무나 크고 있습니다. 환자부담은 둘째 치더라도 환자들 가족부담도 엄청난 비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간부여러 분들에게도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시설 중에서는 아파서 고통 받는 주민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의료서비스입니다. 23만명의 인구를 가진 북부권 3개 시·군에 공립공공의료기관을 하나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 저는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사님에게 요구를 드립니다. 의료나 복지는 개발보다는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시급의 타당성을 절실히 느끼신다면 오늘 본의원에게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공공의료기관의 설립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의 두 번째 질문은 지방분권의 문제입니다.

분권은 수도권 지역의 집중과 지역 불균형 개발로 초래된 지방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치솟아서 NGO와 지식인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의근 지사님도 광역자치단체장들을 통해서 중앙정부에 간헐적으로 분권의 필요성을 요구한 적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밝힌다면 다가오는 19일은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을 투표하는 날입니다. 저의 자당 소속인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민주당 노무현 후보 과연 평소에 지방자치 11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이 주인인 시대라고 인식을 하고 계셨는가, 한 번도 주민자치시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거철이 되어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민의 표를 잡기 위해서 여야 양당 후보들은 오늘도 거리 유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현실입니다만 오늘 이 자리 우리 동료의원들도 대통령 선거하러 나갔습니다.

과연 여야 대통령 후보자들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신경을 썼더라면 아마 지방민들은 후보자들이 내려올 때마다 갈채의 박수를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은 분위기가 냉랭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너무나 소외 받았기 때문에 지방민의 분노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지방을 괘시하고 지방민에 대한 애정을 갖지 않는 이번 대통령 후보자들의 선거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앞장서서 보이코트를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청와대에 계시는 김대중 대통령은 '71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지방분권론을 들고 나왔었고 '98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지방분권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겠다고 수많은 공약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99년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중앙정부의 모든 권한들을 지방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양을 하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이의근 지사님께서도 2년간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 몸담았습니다.

그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는 약 2,500여개의 국가 위임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발굴을 했습니다. 발굴을 해놓고 지금까지 이전된 것은 110개정도에 불과합니다. 너무나 아쉬운 것은 중앙정부 소속의 지방특별행정기관의 통·폐합의 문제, 그리고 교육자치, 경찰 자치에 대해서는 지방이양추진위에서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에 있는 김대중 대통령이 너무나 야속한 분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불행한 민족답게 다섯 번째로 실패한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12월19일을 맞이해서 어찌 보면 여섯 번째로 실패한 대통령을 마감하고 제16대 대통령을 맞이할 것입니다.

과연 김대중 대통령과 이 나라의 정부 관료들 그리고 중앙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지방을 조정할 권한을 잃은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방을 조정할 권한을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지시나 장관의 지시 모든 것이 누수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 조정 권한을 잃은 나라, 이 나라가 과연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국가!

지금 우리 지방은 무너지고 있는 지방입니다. 그리고 빈사상태에 빠진 지방경제, 허우적거리는 지방대학, 활개치는 난개발, 그리고 혐악해진 지역사회의 지역감정과 지역갈등! 이 모두가 누구의 책임입니까? 저는 이 나라 중앙정치권의 위정자들의 책임이라고 돌리고 싶습니다.

서울의 수도권의 국회의원들은 지금까지 수도권이 규제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더욱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규제완화 법안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방의 국회의원들은 수도권을 규제해야 된다고 규제 억제법안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양진영이 대립해서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이 11건이나 됩니다.

이제는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들이 주민을 대신해서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번에 선택되는 대통령은 아마 이 지방분권 수도권의 폐해에 대해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의 폐해에 대해서 각성하지

않고 각인하지 않으면 임기 2년안에 대통령의 하야운동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사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방자치 11년, 민선 자치 7년, 이의근 지사님께서서는 민선 3선 지사로서 전국 최다 득표로 당선되었습니다. 16개 광역 시·도지사 중에서도 가장 선두에서 모범이 되어야 될 그런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남은 재임기간에 3선 민선지사로서 실패한 지사로 남기보다는 성공한 지사로 남기 위해서는 마지막 주민자치 11년의 풀뿌리민주주의 반석을 쌓는 그 중심에 설 용의가 있느냐고 저는 이 자리에서 당당히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의근 지사님께서 앞장을 서신다면 우리 57명의 광역의원 들도 지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방민들의 심적인 분노와 갈등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께서 다시 한번 유념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중앙정부에서는 우리의 요구를 쉽게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중앙정부나 중앙정치권에서 필요로 했을 때만이 우리에게 위임을 하지 절대로 위임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앉아서 기다린 것은 연목구어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는 이 자리에서 주장합니다. 우리 광역의회와 지방 자치단체장, 교육감이 하나된 목소리로 중앙정치권과 중앙정부를 향해서 지방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자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방은 피해해 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서울은 진공청소기, 거대한 공룡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앙정부를 향한 해바라기, 해바라기가 아니라 돈바라기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무리 국세와 지방세의 8대2의 비율이라 하지만 이제는 자치입법권, 행정권, 조직권, 재정권을 서서히 이전하지 않으면 지방 자치 11년이 아니라 앞으로 될 지방자치의 미래와 발전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 조례안 : 10건
- 예산안 : 2건
- 동의안 : 19건

□ 조례안 : 10건

- 지방공사경상북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경북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경북체육고등학교수영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공사경상북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2. 12. 18

경상북도조례 제 호

지방공사경상북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공사경상북도의료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병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 병원의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20조 제1호 중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 제4호”를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로 한다.

제22조의2 제1항 중 “3월내”를 “2월 이내”로 한다.

제28조의2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병원에 대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하며,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북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2. 12. 18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북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북개발공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20조 제1항 5호내지6호를 8호내지9호로 하고, 동조 동항 제5호내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일반건축물의 건설 및 분양, 임대관리사업

6. 관광지 및 관광단지, 리조트, 휴게소 등의 조성 및 임대관리사업

7.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사업

제2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사에 대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하며,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 중 “3월 이내”를 “2월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 상 북 도 의 회 의 장 최 원 병

2002. 12. 18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가 설립 운영하는 공사·공단(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장 또는 원장 및 이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경상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경상북도가 설립한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경상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추천)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공사를 최초로 설립하는 때에는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4인과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

1.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2인
2. 도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3. 당해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당해 공사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도 소속 공무원(도의회의원을 포함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도지사는 사장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사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도의회와 당해 공사의 이사회에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의 추천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5조(위원회의 존속) 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사장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도지사가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도의 공기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사장후보의 추천)** ①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 ②위원회는 사장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 ③위원회는 사장후보추천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 ④도지사는 추천된 후보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사장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사장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 ⑤위원회는 사장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무협조) ①위원회는 사장후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또는 당해 공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나 공사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으로 임명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장후보로 추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2. 12. 18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①영 제7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은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상간판중 옥상바닥으로 부터의 높이가 4미터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

2. 영 제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적의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돌출간판
3. 영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미만인 지주이용간판
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 4미터미만인 애드벌룬
5. 선전탑
6. 영 제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7. 그 밖의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경상북도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영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시·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2. 옥상간판(영 제19조제6항 단서규정에 의한 높이 180센티미터이하인 게시판과 게시시설없이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은 제외한다)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구조계산서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확인 서류

③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광고물등중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검인 또는 압인,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①영 제9조제4항·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등중 시장·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과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로형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돌출간판
3. 영 제19조제2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 또는 높이가 4미터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주이용간판
5.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6.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②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등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제외한 광고물은 시장·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당해 건물명,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품·영업내용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중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

제4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1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2. 지상 변압기함
3.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4. 지하철·지하도·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5. 교통안전시설물
6. 낙석방지시설물
7. 방음벽·석축 및 계단
8. 그밖의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하여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건

제5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등) ①도지사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표시방법을 제한하기 위한 특정 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 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 및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내용·종류·색깔·규격 및 모양
3. 표시위치 또는 장소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6조(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막이나 연기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빛이나 광선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3. 광고물등의 바탕색에 채도 12이상인 적색(한국표준색표집에 의

한다)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을 2분의 1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중 1면의 표시면적이 5제곱미터이하인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안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과 영자·한자 등 외국어 1개이상 병행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한자로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는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19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간의 수평거리는 30미터이상으로 한다.

②시장·군수는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미터이내 지역안에 옥상간판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의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 30미터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밖의 당해 건물부지안에서는 지주이용 간판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주이용 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4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은 제외한다.

2. 동일한 장소 또는 건물부지에 2이상의 지주이용 간판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

로 표시하여야 한다.

3.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4.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전화번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5.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및 관광지에서는 네온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영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밖에는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 위치한 당해 건물부지안에는 지주이용간판을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건물·시설물등의 건물부지안은 제외한다.

1.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2.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3. 여건상 지주이용간판외에 다른 광고물등의 표시가 곤란한 건물 또는 시설물 등

제9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도시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에는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이내 지역안에 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의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 1킬로미터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영 제23조제2항제5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휴지통, 벤치
2. 그 밖의 공공시설물로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편익시설물

②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중 영 제26조제3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가로등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도시경관의 훼손 및 도로교통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때에는 그 지역과 가로등주의 수량, 표시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①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1이내로 광고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소의 출입문 또는 창문에 추가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을 표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2.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12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로형 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1층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영 제15조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당해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1이내이어야 한다.
2. 제1호의 본문 규정에 의한 판류이용 간판의 크기는 가로 60센티미터이내, 세로 20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2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3.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 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3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 간판은 벽면이용·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간판에는 공연중 또는 다음 공연의 내용에 관하여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폭의 3분의1이내이어야 하고, 세로 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1이내이어야 한다.
2.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지주를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건물의 부지내에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3. 2개이상의 공연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부지내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현수막의 표시방법)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은 벽면이용, 지정게시대이용, 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그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행사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다만, 제

4항제3호에 의한 단일형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와 세로크기의 2분의1이내(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길이는 또한 같다)이어야 한다.

4.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현수막(지정게시대 포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본문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내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 건물 벽면에 영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후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한 게시시설의 길이는 당해 건물폭(창문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1이내, 세로의 길이는 건물의 높이이내로 표시하되, 게시시설의 상단은 건물의 상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이상이어야 한다.
3. 게시시설은 당해 건물전체에 4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시장·군수가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가로는 10미터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이내로 표시하여야 하고 재질

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은 하나만 표시할 수 있다.

④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하며, 단일형은 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 연립형은 2이상의 지주를 사용하여 여러개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제3항에 의한 지정게시대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말한다.
2. 지주의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단일형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이내이어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당해 건물에 입주한 업소수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초과시마다 1개씩(최대 4개이내)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연립형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 6미터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내로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소에 한하여 업소당 하나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이내이어야 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나. 공중위생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라.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업소

제15조(벽보의 표시방법)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벽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
2.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이내, 세로 55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제16조(전단의 배부방법)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단은 직접 나누어주거나 건물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하여야 한다.

제17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①영 제31조제3항제2호의 2(영 제31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등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이 주거환경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광고물등이 축사나 식물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밖의 시장·군수가 주거환경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②영 제31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및 동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운

전자 또는 보행자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하며, 생활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시·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의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의 표출은 다음과 같다.

1. 시간당 표출비율의 25퍼센트 이상으로 표출하여야 한다.
2.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출함에 있어 국정홍보, 관계법령 입법 예고, 기타 일반 공익광고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정홍보처장이, 도정 홍보내용은 도지사가, 시정·군정 홍보내용은 시장·군수가 각각 정하여 표출의뢰하는 사항을 표출하여야 하며, 그 세부기준은 도지사가 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8조(표시방법의 완화)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표시위치 또는 장소
2. 광고물등의 표시내용·종류·규격·모양 또는 색깔
3.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9조(도위원회의 구성) ①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위원회 위원은 다음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 위원은 업무비중을 감안하여 당연직으로 정할 수 있다.

1. 옥외광고·도시업무 담당과장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디자인 등 옥외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기타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이하 “도소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도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도소위원회는 도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 수는 도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은 도위원회의 위원중에서 도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도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시·도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도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도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한 도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의 개정 및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기타 도지사가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도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도위원회에서 도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안전

나. 기타 도지사가 도위원회의 심의사항중 도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안전

②도위원회 또는 도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심의안전 제출방법, 심의기준등 도위원회 및 도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안전도검사)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서에 의하여 실시하되 검사자는 확인 서명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하의 건축직·전기직·토목직 기타 관계공무원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등) 영 제3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게시시설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
3. 기타 시장·군수가 광고물등 중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장소등과 관련하여 붕괴·추락 및 파손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발생의 소지가 있어 시·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광고물

제23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①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검사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되, 시장·군수는 그 인원 및 시설의 규모, 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 1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사무실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및 기타 시장·군수가 안전도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장비

제24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등) ①시장·군수는 영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당해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군수는 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당해 시·군의 게시관 또는 당해 시·군의 공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의 종류·수량
2. 광고물등에 표시된 내용
3. 위반 장소·위치
4. 보관장소·일시 및 담당자 등

③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는 영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반

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권한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다.

②도지사는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군수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별표 1】

권한위임사항(제25조 관련)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1	가림간판규격의 설정	영 제19조 제7항 및 제20조제6항
2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지정	법 제9조제1항 영 제38조제6호 조례 제22조제3호

【별지 제1호서식】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이상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옥 외 광 고 물 등 안 전 도 검 사 서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 소 명		④ 전 화 번 호	
	⑤ 주 소		⑥ 검 사 구 분	신규·갱신·변경
⑦ 광고물등허가 일자 및 번호			⑧ 광 고 물 등 의 류	
⑨ 표시위치 또는 장 소			⑩ 광 고 물 등 의 격	
⑪ 신 청 일 자			⑫ 검 사 일 자	
검 내 사 용				
검 의 사 견				
안 전 도		합 격, 불 합 격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9조 및 ○○시·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 직위(직명) : 성명 : ⑨				

364mm×257mm 보존용지(1종) 70g/m²)

검 사 항 목		검 사 결 과	비 고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 (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사용 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 부위	기초 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 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 (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 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풀 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 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 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자재의 상태		
	안정기, 과전류 및 누전차단기, 피뢰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 통행 장애		
기타	기타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 여부 및 광고물 퇴색여부 등		
법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천재지변, 인위적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폭우·폭설후, 폭발·충격 후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대장

[illegible]

364mm×257mm 보존용지(1종) 70g/m²)

【별지 제4호서식】

제거한 광고물등의 목록(제24조제3항)

[illegible]

364mm×257mm 보존용지(1종) 70g/m²)

【별지 제5호서식】

광고물등 청구 및 인수증				
청 구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광고물등 종류			⑤수 량	
⑥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광고물등 인수증				
인 수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광고물등 종류			⑤수 량	
⑥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364mm×257mm 보존용지(1종) 70g/m²)

경상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2. 12. 18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영 제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구조안전·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대상 건축물(주택건설촉진법 제5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권한 위임된 건축물은 제외한다)중 16층 이상인 건축물

나.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

3.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4. 도시계획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전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② 시·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중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10분의1이하로서 1개층 이하의 변경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의 변경

3.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제12조제1항중 “주택과장”을 “주택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경상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내역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사전승인에 있어 【별표1】 에 규정된 사항 2.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승인에 있어 【별표2】 에 규정된 사항 3. 기타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해 도지사 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영 제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u>다중이용건축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영제5조제5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3만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한한다)의 구조안전·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u> 가~나. (생략) 3~4. (생략)	제6조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영 제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u>다중이용건축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구조안전·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u> 가~나. (개정안과 같음) 3~4. (개정안과 같음)

경상북도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2. 12. 18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립예술단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지휘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2. 12. 18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 제17조 내지 제21조 및 제6장 제22조 내지 제2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장 제26조 내지 제33조”를 “제5장 제17조 내지 제24조”로 하고,
“제8장 제34조 내지 제37조”를 “제6장 제25조 내지 제28조”로 하며,
“제9장 제38조”를 “제7장 제29”로 한다.

제38조 “제2호 내지 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접수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경상북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2. 12. 18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중 “주민총수의 1,000분의 1 이상”을 “주민 300명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2. 12. 18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의 평생교육체육과의 건명란중 제2호 및 학교운영지원과의 건명란중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별	건 명	수임기관
평생교육 체육과	2.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평생교육시설의 설·폐 및 지도·감독	교 육 장
학교운영 지원과	3. 제2호 각급학교의 학칙인가	교 육 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북체육고등학교수영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2. 12. 18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북체육고등학교수영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북체육고등학교수영장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수영장의 개장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일반인 개장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전 12시까지로 한다. 다만, 개장시간 이외에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조중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영장 입장료

구 분	1인당 1회 사용료	
	개 인	단 체
어른(대학생)	3,000원	2,500원
청소년 및 군인	2,000원	1,500원
어린이 및 노인	1,500원	1,000원
유 아	1,000원	500원

※ 용어의 정의

- 유아라 함은 6세미만인 자를 말한다.
-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6세이상 12세이하인 자를 말한다.
-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8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 어른이라 함은 19세이상 64세이하인 자를 말한다.
- 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증 또는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 단체라 함은 동일팀의 30인 이상을 말한다.

□ 예산안 : 2건

- 2003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003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세입 예산

- 일반회계(1,996,300,000천원) - 수정없음
- 특별회계(474,426,100천원) - 수정있음
 - ※ 수정내역(경도대학운영특별회계) - 별첨과 같음

☐ 세출 예산

- 일반회계(1,996,300,000천원) - 수정있음
 - ※ 수정내역 - 별첨과 같음
- 특별회계(474,426,100천원) - 수정있음
 - ※ 수정내역(경도대학운영특별회계) - 별첨과 같음

[별첨]

2003년도경상북도경도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세입 삭감조서]

(단위:천원)

쪽	소관부서	내용(부기)	감 액	비 고
295	경도대학	대운동장조성	300,000	

[세출 삭감조서]

(단위:천원)

쪽	소관부서	내용(부기)	감 액	비 고
308	경도대학	대운동장조성	298,900	시설비
309	경도대학	대운동장조성	1,100	시설부대비

[별첨]

2003년도경상북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세출 삭감조서】

(단위:천 원)

쪽	소관부서	내 용(부기)	감 액	비고
		총 계	5,371,200	
		소 계	14,000	
41	공 보 관 실	해외시장개척홍보활동	14,000	
	기획관리실	소 계	400,000	
68	"	임의보조단체 보조금(공통)	300,000	
75	"	도민사이버대회	100,000	
	경제통상실	소 계	91,000	
757	"	상공회의소사무국장선진외국시장시찰	21,000	
758	"	BT산업기술개발사업	30,000	
762	"	염색기술개발지원	20,000	
769	"	기능경기대회	20,000	
	자치행정국	소 계	2,505,000	
176	"	경북학숙운영	25,000	
154	"	직원사기진작휴양시설임차	50,000	
162	"	모범공무원산업시찰(부부동반)	30,000	
180	"	자원봉사우수프로그램개발지원	20,000	
181	"	도자원봉사센타설치및운영	70,000	
"	"	자원봉사자위탁교육	10,000	
"	"	경북사랑경진대회개최	50,000	
174	"	도민의날행사	30,000	
199	"	국유재산관리경비지원	100,000	
204	"	강당흡음재부착·수장공사	90,000	
219	"	맨발지압산책로조성	30,000	
182	"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2,000,000	

【세출 삭감조서】

(단위:천 원)

쪽	소관부서	내 용(부기)	감 액	비 고
	문화체육관광국	소 계	820,000	
815	"	2003경주세계문화엑스포개최지원	500,000	
817	"	촬영세트장유치및촬영지관광자원화	120,000	
823	"	제2회국제여자태권도대회지원	200,000	
	농 수 산 국	소 계	270,000	
503	"	사과동산조성	150,000	
504	"	단감시설재배지원사업	120,000	
	보건환경산업국	소 계	453,400	
331	"	에이즈및성병등홍보물제작	8,000	
344	"	청소년척추측만증검진	20,000	
351	"	도립공원기반시설확충	200,000	
352	"	환경기초시설담당자업무연찬회강사수당	2,000	
355	"	세계물의날행사	5,000	
372	"	산불조심모자제작	2,500	
373	"	박물관개원홍보물제작등	10,000	
377	"	박물관개원식참가급식비	5,000	
387	"	야생동물생태공원조성	100,000	
388	"	수목원진입지방도절개지복구	100,000	
"	"	수목원진입지방도절개지시설부대비	900	

【세출 삭감조서】

(단위:천원)

[illegible]

【부기조정】

(단위:천원)

[illegible]

【증액조서】

(단위:천원)

[illegible]

2003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세입예산(1,805,542,000천원) - 수정없음

☐ 세출예산(1,805,542,000천원) - 수정있음

※ 수정내역 - 별첨과 같음

【별첨】

2003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삭감조서】

(단위:천 원)

쪽	소관부서	내 용(부기)	감 액	비 고
		총 계	2,805,299	
911	교 육 청 (교육위원회)	일선현장의견수렴을위한간담회	27,000	
916	"	사무실재배치공사	68,060	
691	교 육 청 (본 청)	실업계고학과개편	50,000	
983	"	조리사워크샵개최	2,000	
702	"	건물유지관리비	236,931	
"	"	소규모전기및소방시설보수	200,000	
"	"	교직원휴게실비품구입	100,000	
"	"	학교도서실비품구입	200,000	
998	"	특별재정수요지원비(투자)	1,500,000	
724	"	냉난방시설개선	101,500	
1127	교 육 청 (지역청)	교육개혁홍보광고료	5,000	
133	"	교육용노후기자재및교구확충수리	30,000	
1093	"	무인기상관측장치설치	15,000	
135	"	악기구입및수리	30,000	
1034	"	소각료연료	808	
"	"	소각로자기측정및유지	1,000	
1036	"	소각로유지관리	1,000	
369	"	다목적강당설치공사	100,000	
348	"	교단지원및교육여건개선	13,000	
328	"	행정장비교체	8,000	
	총 괄	시책업무추진비 12%	51,000	지역교육 청 제외
	"	여비(총액) 5%	65,000	"

【증액조서】

(단위:천원)

[illegible]

□ 동의안 : 19건

- 2003년도경상북도지방채발행동의안
-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03년도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
- 2003년도경상북도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 2003년도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운용계획안
- 2003년도경상북도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 2003년도경상북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 2003년도경상북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 2003년도경상북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 2003년도경상북도포플라장학기금운용계획안
- 2003년도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
- 2003년도경상북도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운용계획안
- 2003년도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 2003년도경상북도중소기업근로자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 2003년도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
- 2003년도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 2003년도경상북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안
- 2003년도경상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 2003년도경상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정활동보고서(제174회 정례회)

2003. 1 인쇄 / 2003. 1 발행

발행 / 경상북도의회

편집 / 의사담당관실

전화 : 954-9855

FAX : 955-9185

〈비매품〉